

파주시 해외명예주제관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국제교류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해외명예주제관으로 위촉하여
- 우리 市의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우리 市에 제공하여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 우리 市 방문단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방문단에게 현지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명예주제관은 市의 국제교류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 국제교류단이나 통상대표단 등이 해당지역을 공식방문할 경우 이들에 대한 현지 지원을 하여야 한다(안 제2조)
- 명예주제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인회의 간부 등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안 제3조)
- 시장은 명예주제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체제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안 제6조)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명예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 등 해당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파주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교육·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
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6.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촉) ①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②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명예주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주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명예주제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5조 (품위유지) 명예주제관으로 위촉된 자는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등) 시장은 명예주제관을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체제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명예주제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4161
입안자	총무과장	홍덕기
	교류협력팀장	박하형
	담당자	정영택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

[제정 2000. 11. 24 경기도조례 제306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의 해외경제협력, 국제교류등 해외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해외협력관 (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Kyonggi Province, 이하 "해외협력관" 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해외협력관은 도가 해외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지원
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지원
3.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도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도내 시·군의 해외협력
6. 기타 도의 해외협력업무에 필요한 지원

제3조 (위촉대상) 해외협력관은 도와 국제협력업무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외공관장·교민회장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절차 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
2. 무역업·기업체의 임원등 상공인

3. 현지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관습·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
4. 기타 주제국에서 사회적으로 티망이 있는 자

제4조 (위촉방법) ①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해외협력관은 지역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등)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을 도단위 행사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체제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①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료의 송부 및 통신료등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협력관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해외협력관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해외협력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위

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이 이 조례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수출자문관) ①도지사는 해외협력관중에서 적당한 자를 수출자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 등 수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수출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